

(報 告)

성 남 시 의 회 위 원 회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의안 번호	9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9월 15 일

발 의 자 : 장윤영 의원외 9인

1. 제안이유

-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(2000. 6. 16) 개정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"성남시문화정보센터"를 "성남시수정구문화정보센터, 성남시분당문화정보센터"로
개정 (안 제3조 제2항 제3호)

성남시조례 제 호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 제2항 제3호중 “성남시문화정보센터”를 “성남시수정문화정보센터,성남시
분당문화정보센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생략)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-2.(생략) 3.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 직속 기관중 성남시수정구보건소, 성남시중원구보건소,성남시분당보건소,사업소중 성남시환경복지사업소,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, <u>성남시문화정보센터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①(생략) ②----- 1-2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성남시수정구문화정보센터, 성남시분당구문화정보센터-----